

정보소외계층 재정의를 통한 정책방향의 제시: 정보격차조사 모집단으로서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이향수*, 이성훈**, 최정아***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행정학전공*,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

Redifining Digital Poverty : A Study on Target Changes of the Digital Divide Survey for Disabilities, Low-Income and Elders

Hyangsoo Lee*, Seong-Hoon Lee**, Jeong-A Choi***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Dep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Dept. of Digital Cultur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요약 현재 정보소외계층 대상에 대한 정의는 2000년대 초반 정부가 정보격차실태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정보격차조사의 정보소외계층 대상을 검토하고 재 정의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조사의 대상 중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대상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각각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서 이들 집단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격차 조사 대상 장애인을 현재의 지체, 뇌병변, 청각/언어, 시각장애인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15가지 장애유형을 재검토 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정보격차해소 대책의 대상으로서 저소득층의 기준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을 정보소외계층으로 포함시키는 검토가 필요하다. 장노년층의 경우 현재 노인연령기준이 사회통념에 맞추어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년층은 제외하고 65세이상의 노인층에 대해서만 정보소외계층에 포함시켜 정보격차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주제어 : 정보격차,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조사,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Abstract The definition of digital poverty has not been changed since it was used at the first digital divide survey in 2000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and redefine digital poverty targets of digital divide survey. This study examines the present state for the target of the digital divide survey focusing on Disabilities, Low-Income and Elders and then redefines digital poverty for them. The results suggest to reexamine 15 types of disabilities by the revised the Disabled Welfare Law as digital divide targets, rather than limiting to physical, brain, hearing and visual disabilities. For the low-income target, people on the second-to-the bottom income bracket as well as those on basic welfare should be included as the target of low-income people for digital poverty. The age of the elder target for digital poverty should be adjusted to sixty-five or more in the era of aging population.

Key Words : Digital Divide, Digital Poverty, Digital Divide Survey, Disabled, Low-Income, Elders

Received 14 January 2016, Revised 26 February 2016

Accepted 20 March 2016, Published 28 March 2016

Corresponding Author: Seong-Hoon Lee

(Dep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Email: lee.seonghoon@yahoo.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최근 들어 스마트 환경으로 진화하면서 우리사회는 정보격차에 있어 좀 더 복잡한 상황을 맞고 있다. 스마트 환경에서는 기존 방송 전송수단에 얽매이지 않는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고(스마트 폰/스마트 패드류/PC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 시대를 맞아 생활 깊숙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1]. 스마트 폰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따라잡지 못한 일부 소외계층에서는 예전의 PC 및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정보격차와는 다른 좀 더 심화된 정보격차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2]. 2004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정보소외계층이라고 지칭하던 대표적인 대상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의 그룹이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의 범주에 추가되었다[3].

이들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대책은 과연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정보소외계층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정의에 입각하여 정보격차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정보격차해소 대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연구 질문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의해야 올바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정부는 정보소외계층을 올바르게 정의하고 이들이 일반국민들과 비교하여 부족한 정보격차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칭되어지는 정보소외계층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 계층이라고 보이며[4], 특히 스마트 기기의 경우 장애인 접근성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5, 6]. 현재 정보소외계층 대상에 대한 정의는 2000년대 초반 정부가 정보격차실태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당시의 기준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정보소외계층을 처음에 4대 소외집단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에서부터 좀 더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민으로 확장하긴 하였으나 정보소외계층으로서의 장애인이나 장노년층 그룹에 대한 기준 등이 현재의 사회상황에 맞게 수정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정보

소외계층 대상을 검토하고 재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격차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대상인 이들을 우리정부가 올바르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대상 중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대상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각각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서 이들 집단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이들 대상은 6대 정보소외계층 중에서 현재 정보격차 대상으로서 조사 모집단을 선정할 때 대상이 현시대 상황에서 볼 때 예전의 기준으로 정의한다고 판단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현재 조사대상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1980년대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할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후 장애인의 유형은 매우 변화가 컸으며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역시 현재의 정보소외계층대상으로서의 저소득층은 좀더 정교화하여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장노년층 역시 고령화사회가 심화되면서 장년층과 노년층을 다시 재정의하자는 사회적 논의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들 3개 집단에 비해 다문화여성, 북한이탈주민, 농어민의 경우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에 비해 나중에 정보격차조사대상으로 포함된 집단으로서 비교적 최근의 사회상황을 반영하여 대상을 정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에 대한 재정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3개 집단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국내·외 문헌 연구 및 현황 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각종 정부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2. 스마트 정보격차 및 정보격차조사

2.1 스마트 정보격차의 의미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정보환경이 일반화되면서 정보격차 문제는 예전의 유선 인터넷 및 PC기반의 정보격차에 더불어 모바일과 스마트 기기 기반의 정보격차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격차 현상을 낳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정보격차를 스마트 정보화 격차라고도 일컫는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3년도에 개발하고 시범 산출한 '차세대 정보격차지수'로 이러한 스마트 정보격차수준을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스마트 모바일 환경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인터넷 및 PC위주의 정보격차와 달리 라이프스타일이나 문화나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PC기반의 유선 인터넷 중심의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스마트 기반환경에 적합한 신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7].

2.2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연혁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목표 모집단은 전체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구분된다. 조사대상 소외계층은 처음에는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으로 한정하였다. 그 후 2006년까지는 4대 소외계층 중 장노년층 및 농어민은 격년단위로 조사를 추진하였다.

정보격차지수는 2003년에 개발하였고, 2004년부터는 매년 정보격차지수를 산출하여 왔으며, 이때부터 조사대상에 전체국민을 포함하였다. 2007년부터는 전체국민 및 4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추진하였다.

201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민자수가 늘어나면서 2012년 정보격차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에 전국의 전체국민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그룹까지 대상에 포함하였다.

〈Table 1〉 Population of Digital Divide Survey

division	contents
Full nationals	the population over 7 years old
People with disabilities	7-69 years old People with disabilities (Physical , Brain, Hearing, Visually)
Low Income	Ages from 7 to 74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Elders	50 years and over Population
Farmers & fishermen	Farmers and Fishermen aged 15 and over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s over 7 years old
Marriage immigrants	Marriage immigrants over 18 years old

정보격차지수는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과 정보소외계층 간 정보화 수준의 격차이며, 작은 값을 가질수록 정보격차가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격차지수는 접근격차(30%), 역량격차(20%), 활용격차(50%)의 가중합계로 산출하게 된다. 접근격차란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접근 용이성 등을 말하며, 역량격차는 컴퓨터 응용 S/W 및 인터넷 사용능력 수준 등을 의미하며, 활용격차는 컴퓨터, 인터넷의 이용량(양적활용), 일상생활 도움 및 활용정도(질적활용)를 말한다. 그동안 정보격차지수 조사결과의 추이를 보면, 일반국민과 정보소외계층과의 정보격차지수는 '13년 24.8점에서 '14년 23.4점으로 전년 대비 1.4점 개선되었다. 또한 정보격차지수 산출 원년인 '04년(55.0점)에 비해서는 31.6점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국민의 종합정보화 수준을 100%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13년 75.2% 수준에서 '14년 76.6% 수준으로 1.4%p 개선되었음을 의미하며, 정보격차 지수 산출 원년인 '04년의 45% 수준과 비교하면 31.6%p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접근, 역량, 활용 등 부문별 일반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도 각각 94.3%('04년 대비 30.6%p 상승), 64.1%('04년 대비 36.6%p 상승), 63.5%('04년 대비 30.4%p 상승)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8].

〈Table 2〉 information gap (unit: point)

	Comprehensive gap	Access gap	Competency gap	Quantitative usage gap	Qualitative usage gap
2005	46.7	29	65.8	57.8	62.3
2006	38	19.8	57.1	49.7	53.6
2007	34.1	13.5	55.5	47.2	52
2008	32	10.3	54.3	45.6	49.9
2009	30.3	9	51.1	44.3	47.7
2010	28.9	8.2	49.2	42.5	45.9
2011	27.6	7.3	47.2	41.4	43.2
2012	26	6.6	43.9	40.3	39.6
2013	24.8	6.4	40	37.4	38.4
2014	23.4	5.7	35.9	36.5	36.6

source : The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index & Status(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5 ~ 2014)

최근 2012년부터 2014까지 약 3개년의 정보격차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정보소외계층의 접근부문에 있어 정보화수준은 일반국민과의 차이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량 격차 지수나 양적 활용격차지수, 질적 활용격차 등은 접근격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일반국민과의 접근격차 지수는 해마다 감소되어 5.7점을 보이고 있으나 역량격차, 양적활용지수, 질적활용격차 지수는 감소폭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보소외계층간 정보격차정도는 <Appendix 1>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전체국민 대비 소외계층 정보화 수준 역시 가능해 볼 수 있다.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전체 국민과 비교하여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보면,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정보화 수준은 2004년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과 점점 그 간극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 정보화 수준 및 저소득층의 정보화 수준은 공히 85.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노년층의 경우도 74.3점으로 2004년(40.9점)에 비해 33.4점이나 정보화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소외계층 중 가장 낮은 정보화수준을 보인 집단은 농어민으로서 69.4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어민 계층의 경우도 2004년(33.8점)에 비해 35.6점이나 정보화수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3 정보격차조사 대상자의 재정의 필요성

현재 정보격차조사 대상자로서의 정보소외계층은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표 집단에 대한 정의가 매우 표준화된 최소한의 집단만을 모집단으로 삼고 있거나 그 기준이 현 사회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장노년층 등에 대한 정의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들이 이미 20년 이상 되어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정보소외계층으로서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모집단이 되는 장애인 유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의 장애인 유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이후 장애인 유형을 세분하여 현재는 15가지로 장애인을 구분하여 유형화 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기계적으로 정보소외계층을 기초수급자로 정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미 복지격차나 경제격차 등 다른 이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을 두고 볼 때, 정보소외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역시 장노년층 역

시 사회변화에 맞춘 기준점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기계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50세 이상을 정보소외계층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100세 시대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2002년 처음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던 시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특히 장노년층의 연령기준이나 장애인의 범주에 대한 모집단은 다시 재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된다.

3. 정보소외계층의 범위 및 현황

본 연구는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모집단에 대한 재검토를 목표로 하는 연구로서, 이하에서는 정보소외계층 중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에 대한 현황 및 검토를 통해 이들 정보소외계층이 과연 정보소외계층으로서 적절하게 정의되어졌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1 장애인 정의 및 현황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UN의 권고와 장애인의 해 제정 등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함께 정부는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인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UN의 「장애인 권리선언 제1조」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및 사회 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는 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신체장애인의 직업복귀에 관한 권고 99조」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인해 적당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히 손상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 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이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과 함께 정부는 장애인복지 전담부서로 보건사회부 내에 재활과를 신설하였다.

1988년의 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를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3개년 계획 기간> 으로 설정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였다. 1989년에는 장애인등록제도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9, 10].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또한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는데, 신체장애는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구분하여 보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우리사회가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범주 또는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장애인보장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범주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로 한정하고 있었다.

<Table 3> The numb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unit : 1000 people)

type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sum	1,777	1,967	2,105	2,247	2,430	2,512	2,519	2,511	2,501	2,494
Physical	959	1,049	1,114	1,191	1,293	1,334	1,333	1,322	1,309	1,296
Visually	168	206	217	228	241	249	251	252	253	253
Hearing	188	199	218	239	262	277	279	276	273	271
Intellectual	174	135	143	147	155	161	167	173	179	184
Brain	127	194	215	232	252	262	261	258	253	251
Autistic	9	11	12	13	14	15	16	17	18	20
Mental	63	75	82	87	95	96	95	95	96	97
kidneys	42	45	48	50	54	57	60	63	67	70
Heart	13	14	14	15	15	13	10	8	7	6
Respiratory	12	13	14	15	16	16	15	14	13	12
liver	5	6	6	7	8	8	8	9	9	10
Facial disorders	1	2	2	2	3	3	3	3	3	3
Ostomy	10	10	11	12	12	13	13	13	14	14
epilepsy	7	8	9	9	10	10	9	8	7	7

sourc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15)

그러나 2000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뇌병변, 발달장애, 정신, 신장, 심장 등의 장애유형을 추가적으로 장애유형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다시 2003년 개정 시에는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 5종을 추가하였다. 다시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명칭을 변경(2007년 4월)하게 된다. 현재 장애유형은 지

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의 15가지 유형이다.

장애인 수 증감 추이를 보면, 1990년도에는 24만명정도 등록장애인이, 1995년도 37만명, 2000년 102만명, 2005년 178만명, 2007년 210만명, 2008년 225만명, 2009년 243만명 2011년 25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 251만명, 2013년 250만명, 2014년 249만명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10년만에 4.2배, 18년만에 8.5배로 증가하여 2007년 말부터 장애인의 수가 200만이 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장루장애 등의 장애인의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폐성장애나 간장애의 경우는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을 보면, 장애인연금 시행(2010년 7월)에 따라 장애수당 중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면서 2010년 이후 장애수당 수급자수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구분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으로 전환하여 장애수당 수급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수를 말한다.

3.2 저소득층 정의 및 현황

저소득층은 소득계층구조에서 하위를 점하는 계층으로 실용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에 따라 영세민층, 빈곤층, 또는 빈민층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저소득층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목적과 학문적, 행정적 필요성에 의하여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11]. 법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제적 여건에서 생활을 하는 계층을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저생활 보장을 받는 계층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가구규모 등을 반영하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월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12], 2014년도 4인가구의 경우 매월 1,630천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빈곤율은 평균적으로 절대적 빈곤율이 6%, 상대적 빈곤율은 12.3% 등에 이르고 있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매달 지급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만큼을 지급하게 된다.

(Table 4) Minimum cost of living

(unit : One thousand won/month)

households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person	401	418	436	463	491	504	532	553	572	603	617
2 person	669	701	734	784	836	858	906	942	974	1,027	1,051
3 person	908	940	973	1,027	1,081	1,110	1,173	1,218	1,260	1,329	1,360
4 person	1,136	1,170	1,206	1,266	1,327	1,363	1,439	1,495	1,546	1,630	1,668
5 person	1,303	1,353	1,405	1,488	1,572	1,615	1,705	1,772	1,832	1,932	1,977
6 person	1,478	1,542	1,610	1,712	1,817	1,867	1,971	2,048	2,118	2,234	2,286

sourc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2015년 최저생계비는 1인 617천원, 2인 1,051천원, 3인 1,360천원, 4인 1,668천원으로 2014년보다 2.3% 인상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생계비 인상 추이(4인 기준)를 살펴보면, (2009) 4.8% → (2010) 2.75% → (2011) 5.6% → (2012) 3.9% → (2013) 3.4% → (2014) 5.5%로 변화하여 왔다. 최저생계비는 매 3년마다 계속조사를 실시하며, 비계측연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고 있다. 계측연도(2008년, 2011년, 2014년)에는 물가수준 뿐 아니라 필수품목·사용량의 변화 등 생활실태가 반영됨에 따라 비계측연도에 비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절대빈곤율은 전체인구 중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하므로, 최저생계비에 따라 절대빈곤율이 달라지게 된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50%)은

112.1%(2006년)→12.6%(2007년)→12.6%(2008년)→12.2%(2009년)→12.1%(2010년)→12.3%(2011년)→12.2%(2012년)으로 변화하여 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종 원인으로 인해 최저 빈곤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복지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수급의 종류는 총 7가지로 나뉘게 된다. 즉,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나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수급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의 50% 이하인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및 급여 등을 포함하는 소득과 부동산, 금융 등을 포함하는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은 여러 가지 조건들로 정해지기 때문에 빈곤층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구들이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 빈곤 상태의 가구들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의 비율은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상대빈곤층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의 비율은 2006년 27.3%에서 2013년 22.3%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이것은 빈곤상태의 가구들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보격차지수 조사 대상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등록된 전국의 7 - 7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저소득층의 정보격차지수 조사 표본 설계를 보면, 정보격차지수 실태조사 모집단으로서의 저소득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117만명(2013년 빈곤통계연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는 원인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등을 꼽을 수 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경제수준이지만 비수급계

층을 줄여나가려면 기초생활 부양기준 및 재산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으로 기존 통합급여에서 육구를 고려한 맞춤형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탈빈곤 유인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추진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빈곤층 해소를 위한 완화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3.3 장노년층 정의 및 현황

정보격차지수 실태조사의 장노년층은 전국의 가구내 상주하는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의미한다. 장년은 50세 이상 64세이하를, 노년층은 노인세대로서 연령상으로 65세 이상이면 노인을 말한다.

콜린스 사전에 따르면 중년은 일반적으로 대략 40~60세 사이의 나이의 사람으로 간주한다(middle age. CollinsDictionary.com. "Collins English Dictionary" - Complete & Unabridged 11th Edition. Retrieved December 05, 2012.). 옥스포드 영어 사전 현대판은 비슷한 정의를 하고 있지만 더 짧은 기간인 약 45세에서 65세 사이로 중년층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노인의 연령기준은 「노인복지법」 제 26조(경로우대)에서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공공·농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층을 정의하는데 있어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선 후 2026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에 접어들 전망으로 앞으로 12년 쯤 후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시대 도래하는 된다. 「2014 고령자 통계」에서는 ‘고령자’는 6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록된 지표별 성격과 정책적 관심에 따라 고령자의 대상 연령은 차이가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2014년 현재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2.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노년부양비는 17.3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5.8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게 되

는 셈이다.

2012년 기준 60세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남자 21.6년, 여자 26.6년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1990년 219만 5천명(5.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14년 현재 638만 6천명(12.7%), 2030년 1,269만 1천명(24.3%), 2060년 1,762만 2천명(40.1%)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즉,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사회가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면서 노령화지수 등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14년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7.3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인구) 5.8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였으나, 현재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하여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4년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88.7명으로 유소년인구(0세~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는 88명이었으며, 2017년에 이르르면 104.1명으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4. 정보소외계층의 재검토

4.1 정보격차조사 대상자로서의 장애인

현재 정보격차지수 조사 대상에서 만 7~69세 등록 장애인중 지체, 뇌병변, 청각/언어, 시각장애 유형의 장애인만으로 한정된 것은 장애인을 다소 좁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의 개념은 사회구성원들이 누구를 사회적 약자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범위에 대한 합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광범위하게 잡는 사회에서는 장애의 개념이 확대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회에서는 장애개념을 축소하고자 하게 된다. 장애의 개념 역시 시대적으로 변화해 왔는데, 과거에는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 정도에 기준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던다면, 최근 들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의 불편정도에 기준을 두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13].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정보격차지수 조사를 시작한 2002년에 비해 장애유형의 구분을 다양화 하고 있는데, 현재 정보격차지수 조사 모집단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 지수 조사대상 모집단에 좀 더 다양한 장애유형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4가지 조사 유형을 확대하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의 15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더라도,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장루장애 등 등록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조사 모집단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2 정보격차조사 대상자로서의 저소득층

현재 저소득층 인구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지니계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4년 0.302로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보수집이나 정보활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의 정보격차지수 조사 표본 설계를 보면, 정보격차지수 실태조사 모집단으로서의 저소득층을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117만명(2013년 빈곤통계연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는 원인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등을 꼽을 수 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경제수준이지만 비수급계층을 줄여나가려면 기초생활 부양기준 및 재산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으로 기존 통합급여에서 육구를 고려한 맞춤형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탈빈곤 유인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빈곤층 해소를 위한 완화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즉,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을 결정하던 것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이를 통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보격차지수 실태조사 모집단으로서의 저소득층의 정의 역시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정보소외계층으로서의 저소득층은 생계, 주

거, 의료, 교육 등 수급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비수급자이면서 빈곤을 겪고 있는 그룹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015년 3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생계비가 136만원이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인가구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63만원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 100%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지만 최저생계비 120% 기준 이하에 해당되면 차상위자가 되는 것이다.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이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누리는 혜택에 비하면 규모도 현저히 작고 실효성이 떨어져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누리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다. 사실 공공부조의 혜택이 수급권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는 불가피하게 수급권자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14]. 이들이 정보격차대상이 될 가능성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못지 않게 크며, 정보격차지수 실태조사의 모집단에도 차상위계층을 모집단에서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이 시급하다.

4.3 정보격차조사 대상자로서의 장노년층

우리사회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이미 2014년 현재 12.7%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8%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우리사회에서의 노인층에 대한 정의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줄고 있으며(2014년 현재 5.8명이지만, 2020년에는 4.5명으로 줄어들 전망), 유소년인구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노년층의 정의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인 1981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노인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정보격차지수 실태조사 모집단에서 장노년층

은 50이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50세 이상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리라 본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50년대 중반 이후 60년대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 노인층은 현재의 노인층 대부분보다 건강상태가 좋고 기대수명이 높으며,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적·경제적 안정성 등을 갖고, 은퇴 후 제2의 직업이나 자원봉사 등으로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적극성 등을 가진 집단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단지 연령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것은 지나치게 제한된 시각이라 할 수 있다[15].

더욱이 2013년 기획재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중장기정책과제”의 하나로써 중장기적으로 100세 시대에 맞추어 노인연령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70 - 75세로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노인연령기준의 상향 조정이 사회통념상 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한노인회 역시 2015년 현재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노인’의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자고 주장하면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통념 및 현실을 좀 더 반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장노년층의 정보격차지수(DDI)는 2008년 40.9점에서 2012년 74.3점(전체국민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가정)으로 해마다 일반국민 대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50세 이상 64세이하의 장년층은 정보소외계층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보소외계층으로서 “장노년층”은 “노년층”으로 대체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만 조사모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과연 현재의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를 위한 정보소외계층으로서 현재의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의 모집단이 적절하게 정의되어졌는가? 하는 연구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들 3개 집단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을 정보소외대상으로서의 재 정의하고자 하였다.

정보소외계층 대상 재정의가 가지는 함의는, 우선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적정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대상 집

단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격차대책을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정부예산의 능률적인 집행을 고려할 때, 정보격차해소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필요로 하는 계층에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 및 정부예산을 적절히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3대 정보소외계층 재정의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중요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는 등록 장애인 중에서 조사대상은 지체, 뇌병변, 청각/언어,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를 시작한 2002년에 비해 그동안 정부는 장애유형을 다양화 하였으나, 현재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장애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장애인 유형은 2000년 이전 장애인보장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2000년에 뇌병변, 발달장애, 정신, 신장, 신장 등의 장애유형을 추가적으로 장애유형에 포함시켰으며, 그 이후 2003년 개정을 통해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이 추가되어 현재는 15가지 장애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유형을 검토하여 15가지 장애유형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더라도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모집단에 포함시키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앞의 <Table 3>에서도 보듯이 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1990년도에는 24만명정도 등록장애인이, 2000년 102만명, 2007년 210만명, 2014년 249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장애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말부터 장애인의 수가 200만이 되었다. 또한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장루장애 등의 장애인의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폐성장애나 간장애의 경우는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보소외대상으로서 장애인을 정의할때는 현재의 지체, 뇌병변, 청각/언어, 시각장애인 외에 자폐성장애인, 신장장애, 간장애, 장루장애인 등은 정보소외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정보격차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리라 판단되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정보격차대상

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제적 여건에서 생활을 하는 계층을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최저생활보장을 받는 계층을 말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격차 해소 대책의 대상으로서 저소득층의 기준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모집단으로서의 저소득층의 정의 역시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수급자를 저소득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비수급자이면서도 빈곤층을 포함시켜 저소득층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즉, 차상위계층을 정보소외계층으로 포함시키는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장노년층이란 50세 이상의 장년층과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합한 용어로서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모집단에서 장년층과 노년층을 정보소외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50세 이상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50년대 중반 이후 60년대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 노인층은 대부분 건강상태가 좋고 기대수명이 높으며,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을 연령에 따라 정보소외계층으로 정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으로서 장년층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최근 들어 100세 시대에 맞추어 노인연령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연령기준을 다소 상향조정하는 것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장노년층의 정보격차지수가 해마다 일반국민 대비 현저히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있다[16, 17, 18, 19]. 장년층은 더 이상 정보소외계층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65세이상의 노인층에 대해서만 정보소외계층에 포함시켜 정보격차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본 연구는 정보소외대상으로서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격차지수 조사대상을 정의할때의 시대적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 연구가 정보격

차지수 및 실태조사 모집단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만 그에 맞는 정보격차 해소 대책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재검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적절한 정보격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참고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좀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정확한 조사 모집단을 정의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보격차해소 대상을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대상을 재정의하여 오류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를 가짐에도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지 못하고 통계자료 등 일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보소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 본다.

REFERENCES

- [1] Y. M. Ku, M. K. Kim, T. W. Lim, C. Y. Kim, "A study on Activating Mid-Long Term Education of Damage Prevention for Information Alienated Class in the Smart Environment",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2.
- [2] W. S. Kang, H. S. Yang, "A Study on Efficient Policies of solving the Digital Divide for Weak Layers in the Smart Phone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0 no.1, pp.29 - 38, 2012
- [3] S. Y. Lee & M. J. Cheong, "A Study on 'Platform' e-Government for Reducing the digital divide in a Multicultural Society of S.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 pp.1-12, 2014.
- [4] C. J. Yoo, K. T. Kim, S. H. Lim, "The Study on welfare service of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0, No.5, pp.19-26, 2012.

[5] S. K. Cho & Y. Noh, "A Study on web-based employment model for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2 No.1 pp.75-91, 2004.

[6] H. Y. Kim, "Handicapped Persons and Internet : Comparing Web Accessibility Evaluation Too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1 No.10 pp.75-91, 2013.

[7] K. S. Hong, "The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New Digital Divide", New digital divide Plan Seminar proceedings, 2014.

[8] source : The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index & Status(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5 ~ 2014)

[9] Y. H. Kim, "National sectoral National Archives Search", Disabled Welfare Act, 2015.

[10] DOI: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325.

[11] K. W.Lee, D. J. Shin, H. J. Ku, E. J. Kim, "Leisure Activation Plan of Low-Income".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2007.

[1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overty Measurement Surveys", KIHASA, 2013.

[13] H. T. Yang, S. H. Noh, J. C. Hyun, "Social Welfare for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Jungminsa, 2012.

[14] H. W. Lee, "Analysis for the next higher tier using financial panel", Finance Forum,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5] D. C. Kwak, J. O. Yun, K. Shim, J. H. Kim, "Library Service Expansion Strategy of the Eliminating the Digital Divide for Digital Povert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1.

[16] M. Y. Kim, D. J. Seo, J. B. Byun, J. K. Kang, " ICT-based Living in the Contact Type Service Model for Self-life Suppor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4, pp.25 - 38, 2015.

[17] I. K. Jeon, J. H. Chung, "Study of GUI design convergence guideline for the users of aged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7, pp.323-331, 2015.

[18] Hyeon-Ho Park, Hee-Ock Nho, Yong-Ho Kim,

"The Impact of Perceived IT Threat on Convergence Information System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65-71, 2015.

[19] Keun-Ho Lee, "A Measures to Converge Manage an Efficient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Information Security Experts Manpowe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4, pp. 81-86, 2014.

이 향 수(Lee, Hyang Soo)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 200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행정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지식관리,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이 성 훈(Lee, Seong 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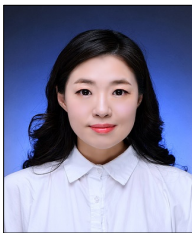


- 1990년 2월 :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문학사)
- 1993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 2002년 9월 :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경제학 박사)
- 2011년 3월 ~ 2016년 2월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공공경제, 지식자본, 생산성, 산업조직

최 정 아(Choi, Jeong A)



- 2002년 2월 :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 200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 책임연구원

· 관심분야 : 정보화평가, 성과관리, 정보격차

〈Appendix 1〉 Informatization level of underprivileged

		Handicapped	Low-income	Farmers & Fishermen	Elders	Average
Total	2004	57.5	55.6	33.8	40.9	45.0
	2006	73.9	73.0	49.8	58.4	62.0
	2008	78.8	78.1	57.9	64.2	68.0
	2010	81.3	80.5	61.8	67.5	71.1
	2011	82.2	81.4	63.6	69.2	72.4
	2012	83.4	82.2	64.8	71.2	74.0
	2013	83.8	83.2	67.8	72.6	75.2
	2014	85.3	85.3	69.4	74.3	76.6
Access	2004	73.0	61.1	51.3	66.3	63.7
	2006	85.4	79.6	69.5	82.9	80.2
	2008	92.6	87.9	80.9	92.5	89.7
	2010	93.4	89.5	86.2	93.8	91.8
	2011	93.5	90.9	87.5	94.3	92.7
	2012	93.9	92.3	87.5	94.9	93.4
	2013	94.7	93.7	88.6	94.3	93.6
	2014	96.4	74.4	89.3	94.9	94.3
Competency	2004	41.1	49.9	18.3	17.7	27.5
	2006	61.0	67.1	29.1	32.4	42.9
	2008	66.0	69.1	33.2	34.5	45.7
	2010	72.8	75.8	37.2	39.4	50.8
	2011	75.1	76.6	38.0	42.8	52.8
	2012	79.0	76.8	39.0	48.0	56.1
	2013	79.8	78.0	43.1	53.9	60.0
	2014	82.1	84.2	47.9	59.0	64.1
Usage	2004	48.1	52.5	22.4	24.4	33.1
	2006	66.1	68.1	36.2	41.1	49.2
	2008	68.8	71.0	42.5	44.9	53.1
	2010	71.7	73.0	45.0	49.5	56.5
	2011	72.9	73.3	47.2	51.9	58.2
	2012	74.1	73.9	49.8	54.4	59.9
	2013	74.6	74.7	55.4	57.5	62.3
	2014	75.7	76.8	56.7	59.3	63.5
Quantitative Usage	2004	48.9	53.7	23.5	25.9	34.2
	2006	67.8	69.3	38.1	41.7	50.3
	2008	70.5	72.6	44.4	45.7	54.4
	2010	74.0	74.1	46.6	50.0	57.5
	2011	74.4	74.4	48.4	51.9	58.6
	2012	74.9	75.0	51.3	53.2	59.7
	2013	75.2	75.9	56.1	57.4	62.6
	2014	75.4	77.7	56.8	59.1	63.5
Qualitative Usage	2004	45.5	49.3	19.5	20.7	29.6
	2006	62.0	64.9	31.3	39.5	46.4
	2008	64.5	67.6	37.5	42.9	50.1
	2010	66.2	70.5	41.2	48.3	54.1
	2011	69.3	70.8	44.4	52.0	56.8
	2012	72.5	71.2	46.2	57.3	60.4
	2013	73.2	71.8	53.8	57.7	61.6
	2014	76.5	74.4	56.7	59.5	63.4